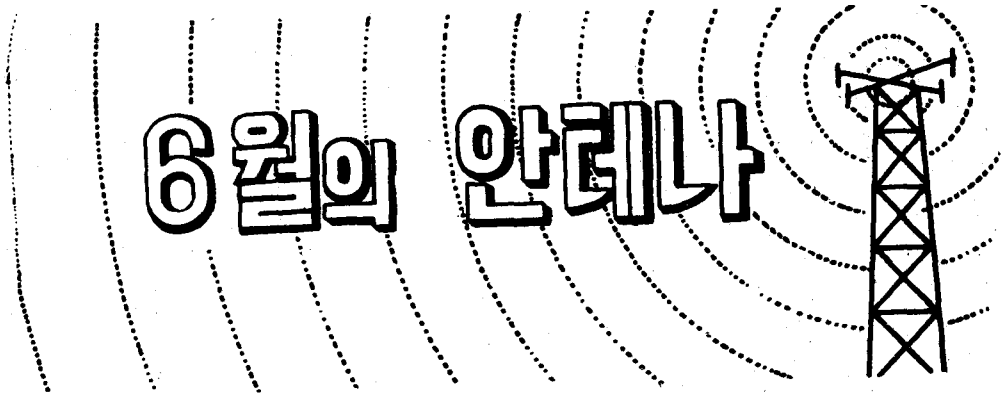

노 영 한
(本誌 編輯局長)

후반기부터 정부 통제 완화될 듯

17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내경제에 有效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산업구조를 탄력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부터 실시되는 제 4 단계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에 기초화장품과 금년들어 독과점에서 해제된 품목을 비롯하여 쌀, 쇠고기를 제외한 농수산물 가격안정대 대상품목, 사료원료 등 1백 60여개를 포함시켜 대폭적인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 이들에 대한 가격규제도 완화할 계획 이라고한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역점을 국내물가의 안정, 국내 유추산업의 보호, 과잉보호체제 탈피, 업계체질개선및 산업합리화 등에 두어 실시하고 國憲위반, 公序良俗의문란과 국민보건상 이유등에 한해 수입금지 대상 품목을 선정하며 수입확대에 따른 물량조절은 차액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계절관세 등 각종관세율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조정해 간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따라 쌀 쇠고기를 제외한 16개 농수산물 가격안정대 대상 품목과 (월간알계 5월호 39p) 사료원료가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현행 수입자유화율 63.3%에서 75%로 높이고 81년 까지는 90%까지 높인다고 한다.

우리는 산업구조를 有效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탄력성있게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찬동하며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여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종 규제조치가 오히려 업계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었던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영국 피낸셜 타임스지의 한국경제 심

충분석 기사에서도 한국 경제는 더욱 복잡해져 소수의 관리들에 의한 집중적인 통제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없게될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해야 할것이다. 라고 외국인의 눈에 비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축산인도 공명하고 있던 사실이다.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원자재 수급절차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조치와 적기적정량의 수급 불균형, 가격통제로 인한 품질저하등은 축산발전 속도를 늦추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여왔다.

다만 우리가 이번 수입개방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려하는것은 축산물의 생산재의 수입자유화가 과거와 같이 물량 시기등이 조절되는 형식적인 수입자유화가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수입되는 자동승인품목으로 되는 작업이 선행되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춘후 축산물의 수입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될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가 가격안정대를 설정하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에 대한 아무런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 못한것을 안 축가는 너무도 잘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입자유화폭의 대폭확대와 함께 현재 사료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마약법 열관리법등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규제를 무역거래법으로 일원화하고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규제는 점차 해제, 자유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 형성을 기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자유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형성을 기하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며 이번 법개정때에 그폭을 확대하여 수입규제 조항 이외에 자유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법규를 과감히 삭제하고 현실에 맞는 법을 정비를 병행하여 줄것을 바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관계부처의 세부 시행지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용두사미가 되는것을 가끔 보아온 우리로서는 생산재의 충분한 공급과 품질경쟁이라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축산물의 수입으로 변질될경우 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결과가 될뿐이다.

모든 제도나 법이 그 운영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른것 같이 이를 계기로 관련 공무원과 업계의 격의없는 의견교환으로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탄소로 금강석을 만들기를 우리는 바라며 결코 숯이 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도 재산세 및 취득세부과

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면제되던 재산세와 (조세감면 규제법 제9조 4항)취득세(동 제10조 2항의 9)가 금년도분(79. 1. 1일 이후 발생분)부터 동법 부칙(68. 12. 17 법율 제2053호) 적용례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68년 축산진흥을 위한 대통령각하의 특별배려로 당시 소득세와 함께 면제 되었던 재산세와 취득세를 10년만에 다시 부과하게 된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법조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9조 4항(재산세의 면제)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목장용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개정 74. 12. 19)

제1조 2항 9(취득세의 면제)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토지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및 건물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요건을 갖춘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개정 74. 12. 19)

부칙 (1968. 12. 17 법율 제2053호) (적용례)제9조 제4항및 제1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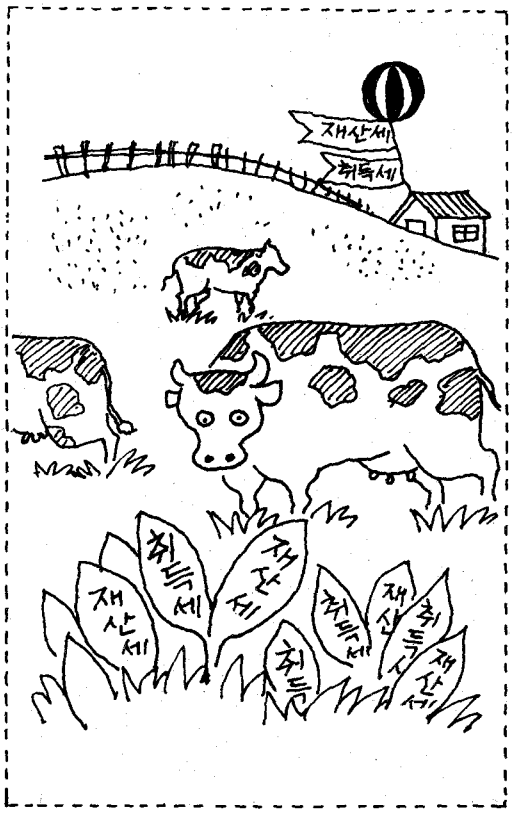

축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대가축일경우는 광대한 목장용 토지가 필요하며 중소가축일 경우에는 많은 평수의 건물이 필요하여 축산업자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 지게 되었다 공산품은 필요 경비를 소비자에 전가시킬수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생산비로 자체 흡수하여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만큼 축산업자의 소득은 감소한다고 보겠다.

요즈음 경제적축산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금년부터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으로 생산비가 그만큼 높아짐으로서 더욱 수지 맞지 않는 축산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축산에 대한 재산세및 부과에 있어서는 관계 법율을 개정하여 계속 감면·혜택이 주어지거나 법율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급조정에 대한 특별 연구가 되어져서 양축농가를 보호하여야 될것이다.

검역시행장소 지정신청요령 일부 변경

국립동물검역소는 지금까지 외국으로 부터 극소량의 종계만 수입되었었으나, 79년부터 많은 수수의 종계가 수입될것에 대비하여 수입종계에 대한 검역시행장소 지정신청 요령을 이부 개선하고 국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우선 종계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종계를(일반 조류포함)도입할때 다음 요령에 의거 검역시행장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신청서에 기재 되어야할 사항

가. 신청인 주소·성명
나. 검역 시행장소 주소지
다. 수출입 물품명및 수출입국명
라. 시설물의 명칭및 지정을 받고자 하는 평수(대지및 건물)
마. 검역시행장의 수용능력(1회기준)
바. 년간 수출입 계획량및 전년도실적

2. 첨부서류

가. 승인 받고자 하는 장소가 냉동공장,수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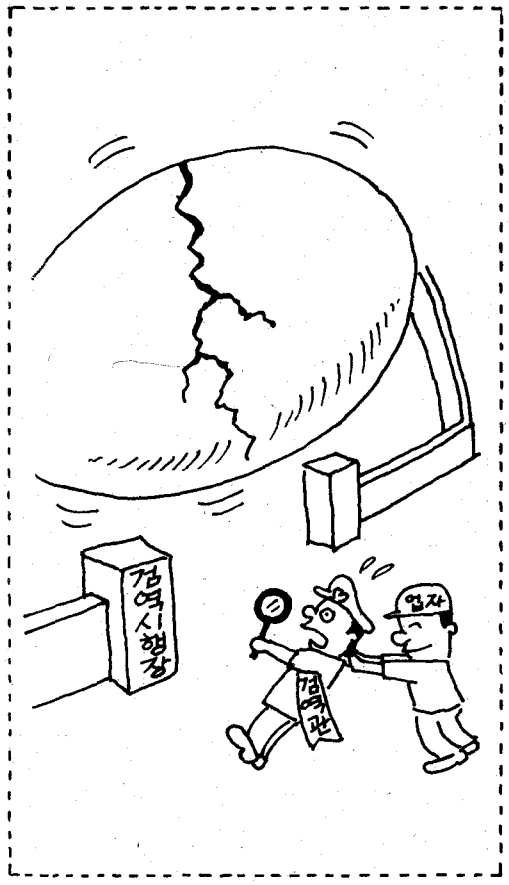

가공장, 작업장(도축장)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나. 검역시행장소의 시설 평면도

다. 인근 약도

3. 초생추(조류)의 검역시행장에는 다음 각항의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가. 검역관실이 있어야하며, 검역상 필요한 사무용품및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한다.

나. 반경 500m 이내에 양계장 부화장 육계처리장 사료공장및 계란집하장등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만연시킬 위험이 있는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 실내 환기시설및 방충 방서 시설이 있어야한다.

라. 폐수및 사체등을 완전 소각처리 할수있는 소각시설과 매몰장이 있어야한다.

마. 독립된 별도의 격리 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충분한 급수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사. 옥외 배수로는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에 매몰 또는 복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검역시행장소 주변에는 세멘부록크나, 견고한 판자 또는 철제 망으로 외부와 분리하여야한다.

자. 정문 출입구및 각계사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하여야하며 탈의장및 욕실을 갖춤을 원칙으로 한다.

차. 소독기구및 충분한 소독 약품을 배치 하여야한다.

4. 검역시행장소 지정 승인기간

동 물 별	단 기	장 기
대 동 물	2월	1년
중소 동물	1월	6월
야생조수류	1월	3월

계사용 파이프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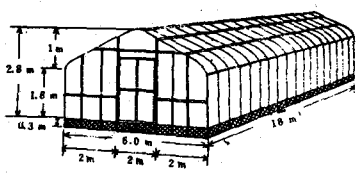

계사특징

1. 반영구적

연합철강(주)만이 생산공급하는 특수연속 아연도금파이프(Paintite-pipe)를 사용 깨끗하고 녹슬지 않으며 수명이 반영구적.

2. 조립, 해체가 간편

독창적 조립부속품의 사용으로 일체 용접 없이 조립. 해체가 극히 간단하며 조립상태가 단정 견고.

3. 가격이 저렴

종래의 양계사 건축비용에 비하여 월등 저렴.

☆ 규격 설계·시공등 상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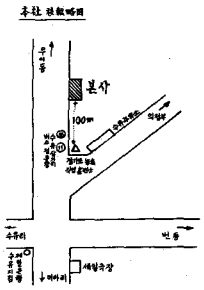

다목적 파이프 하우스 제조 전문 메이커

풍념산업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수유동 223-41

TEL. 989-4933.